

일본의 산업혁신기구 운용방식과 최근사례

최근 일본의 민·관 투자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인재나 기술의 융합을 실현하는 일본 최초의 산업재생 모델케이스로 기대되는 중소형 액정의 통합사업에 참여하는 등 많은 전략산업 분야에 걸쳐 일본산업의 재생과 혁신사업을 주도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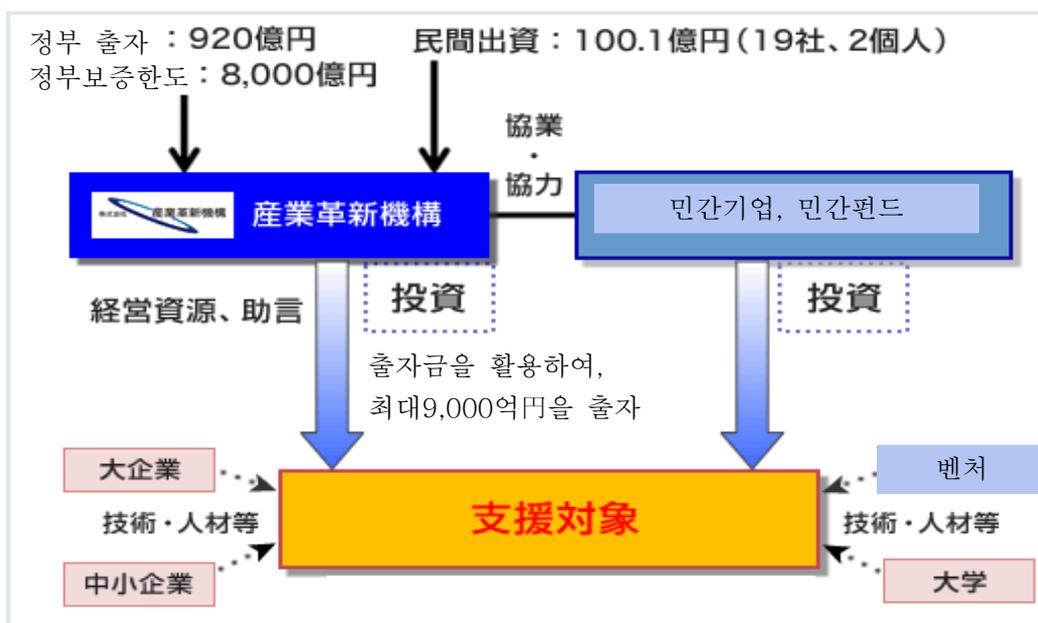
- 일본에서 혁신적인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9년에 발족한 민·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(INCJ : Innovation Network Corporation of Japan) 최근 많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주목됨.

□ 산업혁신기구의 운용방식

- 동 기구는 환경과 생명공학 등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, 혁신 기술의 실용화와 함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지원
 - 대학이나 기업이 보유하는 혁신적인 기술에 자금을 공급하고 실용화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민·관 공동으로 출자한 투자펀드
- 동 기구에는 정부가 820억엔을 출자하고, 파나소닉과 히타치 등 민간기업과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16개사가 85억엔을 출자
 - 기구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8천억엔을 상한선으로 정부가 보증을 하게 돼 있어 최대 9천억엔의 출자가 가능

- 기구의 주요 투자 대상으로는 ▲기업과 대학이 갖고 있는 첨단기술과 특허의 사업화 ▲성장이 예상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▲기업의 유망한 사업부문의 재편 등 3개 분야임.
- ‘오픈 이노베이션(open innovation)’ 을 표방한 이 기구는 기업과 대학, 벤처기업 등의 사이에서 중개역이 돼 첨단 기술과 인재를 모아 혁신적인 기술의 실용화를 지원
 - 구체적으로는 물 산업에서 세계 메이저를 육성하기 위한 물 사업,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에 직결
- 동 기구는 지난 4월 성립된 개정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(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(약칭, 산활법) : 1999년 제정, 이후 3회 개정)에 설립 근거를 둔 것으로, 1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
- 일본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설립한 배경에는 벤처 대상 자금 지원규모가 구미 각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는 지적임

<도 1> 산업혁신기구의 운용방식



□ 최근 운영사례와 특징

- 가장 최근 사례는 산업혁신기구의 참여에 의한 관 주도의 액정연합으로서 도시바·히타치제작소·소니 등 3사에 의한 중소액정 패널 사업의 통합기업 설립을 들 수 있음.
- 금년 가을을 목표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봄에 사업통합을 완료할 계획인데, 이것은 인재나 기술의 융합을 실현하는 일본 최초의 산업재생 모델케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- 발족 이후 이제까지 13건의 사업운용사례가 있는데 <표1>에서와 같이 6개 분야에 걸쳐 4개 사업방식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.
- 산업혁신기구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▲사회적 수요에의 대응, ▲성장성, ▲혁신성 등 세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.

< 표 1 > 최근 산업혁신기구의 운용사례

	그린 (환경)	라이프 (생명과학)	아시아(패키지형인프라)	관광	IT	기타
첨단 기초 기술의 결 집/활용	○그린디바 이스알프전 기가 분할 재산으로서 출자	○라이프 사 이언스지적 재산권펀드 :LSIP) : 다 케다약품 등 4개사 출자				
벤처기업 등 의 경영자원 결집/활용	○제과(소형 풍력발전): 민간벤처캐 피탈이 출자 ○레낙스(리 튬이온 전 지): 민간 벤 처 캐 피 탈 출자	○아네로포 마(항암제디 리버리) :제 약 기 업 이 개 발 자 금 일부 출자		○PEACH아 비에이션	○제뉴전(차 세대플래시 메모리) : 민 간 기 업 출자	○나카무라 초경(고경 도재료정밀 가공)

기술 등을 핵심으로 한 사업의 재편통합			o국제원지력 개발		o일본인터 (파워디바 이스)	o지올레조 난스(분석 기기)
해외경영자 원 활용			o호주물사 업:미츠비시 상사, 닛기 (日揮) 출자 o칠레물사 업:마루베니 출자			

□ 시사점

- o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혁신기구와 관련하여 두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음.
 - 하나는 우리도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일본의 산업혁신기구와 같은 지원방식을 골자로 한 한국판 산업혁신기구 도입과 관련된 것임.
 - 다른 하나는 일본의 통상공세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것임
- o 이 두 가지 사안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일본의 산업혁신기구와 같은 사업지원방식이 국제법, 특히 WTO규정 등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임.
- o 산업혁신기구의 근거법인 「산활법」의 모태라고도 볼 수 있는 사업혁신법 제정시(1990년대)에도 준비과정에서 WTO보조금 규정이나 경쟁정책 등 측면에서의 저촉여부를 둘러싸고 일본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음.
- o WTO 보조금 규정과 관련하여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

최소한 지원대상에 있어서 대상산업이나 기업 등에 관한 특정성이 없어야 함(예를 들면 특정성이 없는 기초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등은 가능).

-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산업혁신기구에서 투자대상 업종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음.
 - 또한 지원방식이 저리의 융자나 보조금 지급이 아니고 출자라는 점에서 보조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음.
- 따라서 산업혁신기구를 포함하여 일본의 주요 산업지원관련 제도를 대상으로 WTO 규정 등에의 저촉여부에 관한 보다 정밀한 검토와 분석이 뒤따른 후에,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.

<참고자료>

일본경제산업성(<http://www.meti.go.jp/topic/data/110831kakushinkiko.html>),

『평성 22년도 산업혁신기구의 업무실적 평가』 8월 22일 외 각종 포털 사이트